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405
결재일자	2016.1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활주거담당	생활보장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심규철	박종학	代김명숙	전결 01/06 박형중		
협 조					

## 2016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행계획

2016. 01.

교육문화복지국  
생활보장과

# 2016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행계획

저소득 근로 빈곤층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,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근로유지형」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## I 사업근거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, 제15조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, 제20조, 시행규칙 제25조, 제26조
- 지방자치법 제9조

## II 사업목적

-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·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- 타 자활사업(보조사업) 참여조건에서 제외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구 자체사업 별도편성

## III 사업개요

### 참여대상자

- 보조사업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주거,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불가능)
- 구 자체사업 :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% 이하인 자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불가능)

## □ 사업기간

- 보조사업(국시비) : 연중추진(1월 ~ 12월)
- 구 자체사업 : 연중 10개월 추진(2~7월, 9~12월)
  - 고령자 참여에 따른 흑한기 및 흑서기 사업 일시중단(1월, 8월)

## □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 : 650,000천원

- 보조사업 : 600,000천원(국비 60%, 시비 28%, 구비 12%)
- 구 자체사업 : 50,000천원(구비 100%)
- 사회보험 가입
  - 보조사업 : 고용, 산재, 연금보험 가입
  - 구 자체사업 : 산재보험 가입

### 《보험관련 참고사항》

- ▶ 건강보험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는 가입제외
  - ▶ 연금보험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는 가입제외 대상이었으나  
연금보험법 개정예 따라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가능
  - ▶ 산재보험 : 당연가입대상
  - ▶ 고용보험 : 고용보험법 개정예 따라 임의가입 →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
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조건부, 일반)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 
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, 이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
(고용안정, 직업능력은 가입대상이나 실업급여는 제외)

## □ 인건비 지급기준

- 보조사업 : 25,550원(급여 22,550원, 실비 3,000원) X 20일(월평균)
- 구 자체사업 : 25,550원(급여 22,550원, 실비 3,000원) X 10일

2015년 추진실적

(단위 : 천원/명)

구분	예산액	집행액	집행율	참여인원	비고
보조사업	563,000	557,995	99.1%	877	누적인원
구 자체사업	50,000	45,310	90.6%	119	

**IV 2016년 사업추진 방향**

2016년 사업추진 기본방향

○ 보조사업

-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·시행
- 자활역량평가표 평가점수에 따라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자활사업으로 유도

○ 구 자체사업

-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(기타 공공일자리사업 탈락자 등) 적극 발굴
- '11년 폐지수거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'13년 구자체 참여자 계속 참여(8명)
- 주민 복지증진 실현

참여대상자

○ 보조사업

-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주거,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참여 불가능)
  - 1)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자
  - 2) 간병 및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

○ 구 자체사업

- 연령(65세이상)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자
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재산 및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
-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재산 및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

## 참여인원

- 보조사업 : 82명/월
- 구 자체사업 : 20명/월

## V

## 세부사업 추진계획

### 대상자 선정

- 보조사업
  - 선정기준 적합 수급자 배치
  - 선정기준 적합자 전원 참여(예산범위 내)
  - 참여자 우선순위
    - 1) 생계급여수급자(1순위) → 의료급여수급자(2순위)
    - 2) 생계급여수급자 우선배치 후 예산범위 내 순위별 참여
  - ※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지형(보조사업) 자활사업 참여금지
- 구 자체사업
  - 신청자격
    - 1)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
      -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자료가 있을 경우 적용(예:기초노령연금 등)
    - 2) 국민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)부과금액에 따른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
      - '16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'16년 1월중 별도 통보
    - 3) '11년 폐지수거노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'13년 구 자체 참여자(8명)

## □ 추진일정

○ 보조사업 : 선정기준 적합자 전원 참여(예산범위 내)

- 사업실시기간 : 2016. 1월 ~ 2016. 12월

○ 구 자체사업 : 신청접수 및 선발자 해당 동 배치

- 신청접수 : 2016. 01. 18(월) ~ 01. 22(금)

- 선발배치 : 2016. 02. 01(월)

- 사업실시기간 : 2016. 02 ~ 07 , 2016. 09 ~ 12 (연 10개월 실시)

※ 1월(혹한기), 8월(혹서기)은 참여자의 건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일시 중단

## □ 대상사업

○ 사업분야

-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사업

- 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, 지역환경정비,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노동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

- 하천정비, 불법침지류 제거, 뒷골목 청소, 재활용품 분류 등 경노무 사업

○ 제외사업

- 공원관리 등 별도의 자체예산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 불가함

## □ 급여지급 방법

○ 급여기준(일/5시간 근무) : 25,550원(급여 22,550원, 실비 3,000원)

○ 급여지급방법 : 해당 월 사업종료 후 익월 5일 전까지 개인별 계좌지급 원칙

※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자 요청시 가족계좌 입금가능

○ 본인 사정으로 지각·조퇴한 경우 실근무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

※ 급여 : 22,550원[(기준급여 X 실근무시간/5시간) + 3,000원(실비)]

○ 주차, 월차수당 지급

▶ 지급대상 : 보조사업 참여자

※ 구 자체사업 참여자는 주차, 월차수당 해당없음

## □ 근무시간 및 조건

○ 보조사업 : 1일 5시간, 주5일 근무(월평균 20일)

○ 구 자체사업 : 1일 5시간, 주 2~4일, 월 10일 근무

※ 사업부서 여건에 따라 월10일 이내 주 2~4일 유동적으로 사업추진

○ 근무시간(공통)

- 근무시간 : 09:00 ~ 15:00 (5시간)

- 휴게시간 : 12:00 ~ 13:00 (중식 및 휴식)

○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

-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근무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조정가능

예) 출근시간을 07시로 조정

- 사업특성상 야간근무(새벽 및 심야근무)가 불가피한 경우 야간 근무시간의 3.5시간을 주간근무 5시간에 준하여 처리가능

※ 야간 근무시간 : 20:00 ~ 07:00

## □ 참여자 관리

○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장지도 책임자를 임명하여 근로인원을 점검하고, 작업량을 부여하는 등 사업개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

○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

- 급여, 근로시간,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,

- 특히, 급여에 관한 사항(일당,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)은 서면으로 명시하고, 사업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예방

※ 참여신청서(붙임#1)에 참여자의 서명(날인) 받아 비치할 것

○ 사업 참여자의 연령, 사업장별 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

## □ 감독 및 보고

- 자활사업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통보
-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건,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 
(안전사고, 보도기관취재, 기타 중요한 민원 등)

## VI

## 행정사항

- 2016년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제출 : '16. 01. 22.까지
- 자활근로사업 근무상황부(사본) 및 추진실적(월보) 제출 : 매월 25일한
- 자활근로사업 관계공부 작성비치(붙임참조)
  - 작업일지, 근무상황부, 참여조건

붙임 : 1.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신청서(양식) 1부.  
2.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작업일지(양식) 1부.  
3.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무상황부(양식) 1부. 끝.